

국제톤수증서(국제톤수확인서) 발급신청서				처리기간 10 일
소 유 자	성명(대표자명)		생년월일	
	주소			
	상호	(전화:)		
선박번호			선박의 명칭(영문)	
신청구분		☐ 국제톤수증서 ☐ 국제톤수확인서		
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				
「선박법」 제13조제1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(국제톤수확인서)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지방해양수산청(해양수산사무소)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				
※ 첨부서류: 1. 일반배치도 2. 선체선도(「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」 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 은 선박은 제외합니다) 3. 중앙횡단면도 4. 강재(재료)배치도 5. 상부구조도 6.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(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비고: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 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.				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 수수료표 또는 대행 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 릅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